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여 수 시 보

시정방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 1. 활력있는 지역경제
 - . 수준높은 교육복지
- 1. 앞서가는 해양관광 1. 걱정없는 안전사회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- 여수시 고시 제2017-230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/3
- 여수시 고시 제2017-23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/4
- 여수시 고시 제2017-23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/5
- 여수시 고시 제2017-233호 제3차 어장관리 시행계획(안) 고시 /6
- 여수시 돌산읍 고시 제2017-3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/9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7-1601호 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/10
- 여수시 공고 제2017-1635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공고 /12
- 여수시 공고 제2017-1636호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/14
- 여수시 공고 제2017-1637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공고 /20

회				
함				

여수시 고시 제2017-230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.

점용·사용 허가번호 (허가일)	준공검사 신청기	\	점용ㆍ사용	허가면적	준공검사 확 인 증	공사내용
	주 소	성 명	장소	(m²)	교부일자	ठ १५५ ह
2017-42 ('17.5.22.)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-39, 516호 (백석동,동문굿모닝타워1)	㈜엑스지오 (대표 홍정표)	여수시 소호동 1219번지 지선	1,296 (직접)	2017. 8. 17.	웅천~소호간 도로개설 시추조사 (해상작업대)

2017. 8. 17.

여수시 고시 제2017-23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.

점용·사용 허가번호	준공검사 신청	자	점용·사용 장소	허가면적	준공검사 확 인 증	공사내용	
(허가일)	주 소	성 명	장소	(m²)	교부일자	0 / 1 = 11 0	
2017-55 ('17.6.12.)	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60, 2층(양재동,성인빌딩	하리이앤씨㈜ (대표 김혁수)	여수시 소호동 1219번지 지선	1,134 (직접)	2017. 8. 17.	웅천~소호간 도로개설 시추조사 (해상작업대)	

2017. 8. 17.

여수시 고시 제2017-232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.

점용·사용 허가번호 (허가일)	준공검사 신	청자	점용 · 사용	허가면적	준공검사 확 인 증	공사내용	
	주 소	성 명	장소	(m²)	교부일자		
2017-53 ('17.5.29.)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(관양동 메가밸리107호)	㈜쏘일테크 엔지니어링 (대표 윤상묵)	여수시 소호동 1219번지 지선	1,131 (직접)	2017. 8. 17.	응천~소호간 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에 따른 지반조사	

2017. 8. 17.

제3차 어장관리 시행계획(안) 고시

「어장관리법」제4조 제1항에 따라 제3차 어장관리 시행계획(안)을 수립하고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
- 제3차 어장관리 시행계획(안) -

□ 면허·허가 동시 갱신

● 어장 환경이 비교적 취약하고 홍합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돌산동바다에 위치 한 어업권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

연도	주요 내용	비고
2018년	해당어업권자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수산조정위원회 상정 후 심의	
2019년	어장환경조사 용역 실시(국립수산과학원)구획어업 동시허가 처분(2019.1.01.기준)	각망 276건 낭장망 183건
2020년	• 돌산 동바다 어장관리해역 지정·고시	
2021년	• 홍합양식장 동시면허 처분	30건/175.75ha

② 어장면적의 조정 등 적정한 이용

- 상습 재해 발생 어장 및 어장청소 미실시 어장은 재개발 금지
- 어류가두리양식장은 기간연장시 어장환경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장 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단축 및 어장 면적 축소
- 공익사업 지구 외의 공유수면에서 특정인 및 특정어촌계가 신청한 관리수면 지정 원천 금지

연도	주요 내용	비 고
2018년	• 가막만 어장밀집지역내 마을어업권과바닥식 양식어업권의 보호구역 조례 제정	
2019년 ~ 2021년	• 구획어업 구조조정 연차사업실시 (60건/3,000백만원)	

③ 어장 휴식

● 최근 새고막 주산지인 여자만 일원이 해양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생산 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모패 보호 등을 위해 시범 실시

연도	주요 내용	비고
2018년	• 해당어업권자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	
2010년	• 수산조정위원회 상정 후 심의	
2019년	• 어장환경조사 용역 실시(국립수산과학원)	
2020년	• 여자만 일부 해역 어장관리해역 지정·고시	
2021년	• 어장휴식 실시(10건, 100ha/400백만원)	2년간 어업권 취소

④ 어장정화·정비

- 어촌계어장을 대상으로 해적생물 및 폐기물 수거 위주의 양식어장정화사업 지속 실시
- 해저 퇴적물이 심각한 홍합양식장 어장청소시 양식시설물을 반드시 철거 또는 이설 후 어장청소 실시
 - 관계공무원 입회 한하여만 어장청소 인정

(단위: 백만원)

	재원별	총사업비		연#	차별 투지	- 액	
사 업 명	세면될	중시합미	' 17	' 18	' 19	' 20	' 21
	총계	27,647	5,333	5,581	5,576	5,581	5,576
	계	2,625	525	525	525	525	525
양식어장	국비	2,000	400	400	400	400	400
1	도비	_	_	_	_	_	_
정화사업	시비	500	100	100	100	100	100
	자담	125	25	25	25	25	25
	계	5,814	1,014	1,200	1,200	1,200	1,200
해양생기	국비	3,830	630	800	800	800	800
수거사업	도비		_	_	_	_	_
	시비	1,984	384	400	400	400	400
조업중	계	1,160	200	240	240	240	240
	국비	580	100	120	120	120	120
	도비	_	_	_	_	_	_
수매사업	시비	580	100	120	120	120	120
친환경	계	1,275	255	255	255	255	255
_	국비	445	89	89	89	89	89
부표 비그건어	도비	90	18	18	18	18	18
보급사업	시비	355	71	71	71	71	71

	자담	385	77	77	77	77	77
	계	16,680	3,336	3,336	3,336	3,336	3,336
친환경	국비	5,005	1,001	1,001	1,001	1,001	1,001
배합사료	도비	_	-	-	-	-	_
지원	시비	3,335	667	667	667	667	667
	자담	8,340	1,668	1,668	1,668	1,668	1,668
어장도	계	10	-	5	-	5	_
공개	시비	10	_	5	_	5	_
황합사자 이설·철거	계	83	3	20	20	20	20
비지원	시비	83	3	20	20	20	20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17. 8. 17.

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허가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허가	피 허 가 :	자	TI A	DJ TJ		=1717171	
번호	주 소	성 명	장 소	면 적	목적	허가기간	비고
2017-	여수시 돌산읍 상동안길 ***	정 * 식	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*** 앞 지선	132 m²	두릅 재배	2017.8.17. 2020.8.16. (3년간)	

2017년 8월 일

돌 산 읍 장

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

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8. .

여 수 시 장

- 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36-3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

나. 명 칭: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사업규모

7 11		규	Ĩ	-	ᆔᅩ	연장	2]	7-1	ス	7-1	가이처리	מן יי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기 능	(m)	^	점	종	점	사용형태	비고
결 정	중로	3	81	12	국지도로	480	소라면 382-16		소라면 1017-18		일반 도로	
시 행	중로	3	81	12	국지도로	104.89	소라면 436-3		소라면 420-2		일반 도로	

나. 사업면적: 1,189㎡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여수시장

나. 주 소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예정년월일: 2017. 8. (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)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2018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: 붙임

- 7. 공람기간: 2017. 8. . ~ 2017. 8. .(14일간)
- 8. 공람장소: 여수시 도시계획과, 도로과
- 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(☎061-659-4077), 도시계획과(☎ 061-659-4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 자의 성명.주소

○ 토지조서

					소 유	자	이해관계인			
번 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편입 면적 (m²)	주 소	성 명	주소	성 명	권리의 종류 및 내용
1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377-8	도로	384	36	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**	유**			
2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22-2	도로	248	150	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**	Ĥ**			
3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1163	도로	5,282	155	-	국토 교통부			
4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21-1	도로	241	241	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**	유***			
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면 420-1	도로	116	116	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7**	정**			
5						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8**	정**			
						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4**	정**			
6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36-3	도로	73	73	여수시 신월동 17**	0]**			
7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36-1	답	1,908	45	여수시 신월동 17**	0]**			
8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22-3	답	1,200	80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0**	배**	여수시 학동1길 19(학동)	여천농협 협동조합	지상권, 근저당
9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21-2	답	1,230	207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0**	배**	여수시 학동1길 19(학동)	여천농협 협동조합	지상권, 근저당
10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20-3	답	2,354	26	여수시 소호동 2** **정유사택 19-6**	안**			
	여수시 소라면관기리	420-2 답		53	53	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7**	정**			
11			답			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8**	정**			
						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4**	정**			_
12	여수시 소라면 관기리	420-4	답	7	7	-	전라남도			
계 1				13,096	1,189					

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공고

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『자동차관리법』 제26 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(폐차)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이륜차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회수·말소 등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16일

- 1. 공고기간 : 2017년 8월 17일 ~ 2017년 8월 31일(15일간)
- 2. 강제처리(폐차) 일시 : 2017년 9월 5일 이후
- 3. 강제처리(폐차) 장소 : 관내 폐차장
- 4. 강제처리(폐차) 대상 : 이륜차 1대 【붙임 내역참조】
- 5. 소유자(점유자) 유의사항
 - 본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(매각·폐차) 됨을 알려 드리며 소유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『자동차관리법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(20~100만원)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- 강제처리(폐차) 시 차량 내 모든 물품(비품)도 함께 처분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 자(점유자)에게 있습니다.
- 6. 문 의 처 : 여수시 교통과 061-659-4146
- ※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 함.

강제(폐차)처리 대상 무단방치 이륜차

관리번호 2017 -41 ○ 차량번호 : 미상 ○ 소 유 자 : 미상 ○ 방치내역 - 견인예정일 : '17. 9. 5.이후 - 방치장소 : 여수시 봉산동 275-11,여수한방병원 옆 도로변

(80*80)

공 고

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17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「지방재정법」(2014. 5. 28.) 일부개정 및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- O"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"에서
 - "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"로 조례명 변경

나.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)

-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44조 및 제70조
 - ⇒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9항, 제37조의2제1항

다.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3조)

○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 이내로 구성.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등

라. 위원회 기능 대행(안 제12조)

○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

마.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

- 3. 개정 조례안 : 붙임
- 4. 예고기간 : 2017. 8. 17.~ 9. 6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메일(gikwang0906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O 의견 제출 사항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 ·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O 의견 제출할 곳

가.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나.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참고 : 기획예산과)

다. 전화번호 : 061)659-3419, 팩스 061)659-5872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기획예산과(담당자 백기광)로 문의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여수시	지방재정위원회	운영 조례	전부개정조례안
○ 성명(단체명) :			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 찬성 반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	

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및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기능)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「지방재정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3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당연직위원은 여수시 기획재정국장, 건설교통국장,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으로 한다.
 - ③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이 자문대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- 2. 위원, 그 배우자,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·4촌 이내의 친족이 자문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의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제8조(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
 - 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
 - 2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
 - 3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- 제9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 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11조(안건배부) 시장은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2조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여수시 지방재정 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라 기 위촉된 지방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.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

「수산업법」제14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면허	연장 허가	어업의 종류	면적	어장	면허기간	연장허가	수산자원 조성금	어 업 권 자		비고
번호	번호	(양식방법)	(ha)	위치	그에게진	기 간	(천원)	주 소	성 명	9175
11150	2017- 34	패류양식 어업	10	경호 소경		2017.9.16. 2027.9.15.	1,000	여수시 신월4길 3	백형순 외 1인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17. 8. 17.